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610
----------	------

제출연월일: 2026. 8. 21.

제출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1. 개정이유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가로등 현수기의 민간 위탁 관리 근거를 마련하여
옥외광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가로등 현수기 민간 위탁 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26조)
- 나. 별표 및 별지 서식 관련 조문 변경

3.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4. 근거법규

- 가. 「지방자치법」 제28조
- 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
- 다.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제3항 및 제12조의2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사항: 해당사항 없음

나. 규제사무심의: 해당사항 없음

다.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예고: 2026. 4. 6. ~ 4. 28.(22일간) / 의견 없음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및 제27조를 각각 제27조 및 제28조로 하고,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시 조례 제12조제3항 및
제12조의2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와 가로등 현수기(이하 “지정게시대
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등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관리 할 경우 수탁자 선정·지도 및 감독 등 위탁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지정게시대등의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별표 4 중 “(제26조제1항제1호 관련)”을 “(제27조제1항제1호 관련)”으로 한다.

별표 5 중 “(제26조제1항제2호 관련)”을 “(제27조제1항제2호 관련)”으로 한다.

별표 6 중 “(제26조제1항제3호 관련)”을 “(제27조제1항제3호 관련)”으로 한다.

별표 7 중 “(제29조 관련)”을 “(제28조 관련)”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제18조제3항”을 “제18조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제18조제4항”을 “제18조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제18조제6항”을 “제18조제5항”으로 한다.

26 (제284회-복지건설위제3차부록)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중 “제19조제1항”을 “제19조제1항 및 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6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 탁 등) ① 구청장은 시 조례 제 12조제3항 및 제12조의2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와 가로등 현 수기(이하 “지정게시대등” 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등 을 위하여 지정게시대등의 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 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라 위탁 관리 할 경우 수탁자 선정·지도 및 감 독 등 위탁에 관한 사항은 「울 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u> <u>③ 그 밖에 지정게시대등의 위 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 청장이 따로 정한다.</u>
<u>제26조 · 제27조 (생 략)</u>	<u>제27조 · 제28조 (현행 제26조 및 제27조와 같음)</u>

[별 표 4]

(현행)

광고물등의 허가·신고 수수료(제26조제1항제1호 관련)

광고물등	수수료
가. 벽면 이용 간판	
1) 자사광고	
- 면적 5㎡ 이하	4,000원
- 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500원
2) 타사광고	
- 면적 5㎡ 이하	40,000원
- 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000원
나. 돌출간판	
- 연면적 5㎡ 이하	20,000원
- 연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 이·미용업소표지등 및 의료기관·약국 표지등(개당)	5,000원
다. 공연간판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라. 옥상간판	
- 연면적 10㎡ 이하	40,000원
- 연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5,000원
마. 지주 이용 간판	
- 연면적 10㎡ 이하	20,000원
- 연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000원
바. 애드벌룬	
- 공중에 띄우는 것(1개)	20,000원
-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옥상간판에 준함
- 지면에 설치하는 것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광고물등	수수료
사.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연면적 1㎡ 이하	3,000원
- 연면적 1㎡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아.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외부에 표시하는 경우)	
- 면적 또는 연면적 5㎡ 이하	13,000원
- 면적 또는 연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5,000원
자.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1대)	
- 비행선	400,000원
- 비행기, 철도차량, 도시철도차량, 선박	10,000원
- 사업용자동차, 화물자동차, 자가용 자동차	2,000원
차.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1개)	5,000원
카. 창문 이용 광고물	
-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는 것(1개)	5,000원
-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는 것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타. 입간판	4,000원
파. 현수막	
1) 일반현수막(가로등 현수기를 포함한다)	
- 10㎡ 이하	6,000원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500원
2)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현수막	
- 10㎡ 이하	5,000원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하. 벽보(50매당)	5,000원

광고물등	수수료
거. 전단(1,000매당)	5,000원
너. 전자게시대(1건)	6,000원
더.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를 적용(전자게시대는 제외)

비고 : 수수료의 징수방법

1. 광고물등별로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시설(광고물의 테두리를 포함)은 포함한다.
2.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 만을 변경할 때에는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고, 광고물등의 규격·사용자재·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3.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4. 현수막 지정게시대, 지정벽보판, 전자게시대 등 구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물 사용료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변경)

광고물등의 허가·신고 수수료(제27조제1항제1호 관련)

광고물등	수수료
가. 벽면 이용 간판	
1) 자사광고	
- 면적 5㎡ 이하	4,000원
- 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500원
2) 타사광고	
- 면적 5㎡ 이하	40,000원
- 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000원
나. 돌출간판	
- 연면적 5㎡ 이하	20,000원
- 연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 이·미용업소표지등 및 의료기관·약국 표지등(개당)	5,000원
다. 공연간판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라. 옥상간판	
- 연면적 10㎡ 이하	40,000원
- 연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5,000원
마. 지주 이용 간판	
- 연면적 10㎡ 이하	20,000원
- 연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000원
바. 애드벌룬	
- 공중에 띄우는 것(1개)	20,000원
-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옥상간판에 준함
- 지면에 설치하는 것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광고물등	수수료
사.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연면적 1㎡ 이하	3,000원
- 연면적 1㎡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아.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외부에 표시하는 경우)	
- 면적 또는 연면적 5㎡ 이하	13,000원
- 면적 또는 연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5,000원
자.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1대)	
- 비행선	400,000원
- 비행기, 철도차량, 도시철도차량, 선박	10,000원
- 사업용자동차, 화물자동차, 자가용 자동차	2,000원
차.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1개)	5,000원
카. 창문 이용 광고물	
-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는 것(1개)	5,000원
-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는 것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타. 입간판	4,000원
파. 현수막	
1) 일반현수막(가로등 현수기를 포함한다)	
- 10㎡ 이하	6,000원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500원
2)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현수막	
- 10㎡ 이하	5,000원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하. 벽보(50매당)	5,000원

광고물등	수수료
거. 전단(1,000매당)	5,000원
너. 전자게시대(1건)	6,000원
더.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를 적용(전자게시대는 제외)

비고 : 수수료의 징수방법

1. 광고물등별로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시설(광고물의 테두리를 포함)은 포함한다.
2.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 만을 변경할 때에는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고, 광고물등의 규격·사용자재·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3.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4. 현수막 지정게시대, 지정벽보판, 전자게시대 등 구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물 사용료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별표 5]

(현행)

광고물등 안전점검 수수료(제26조제1항제2호 관련)

광고물등	적용기준	수수료
가. 벽면 이용 간판	- 면적 5㎡ 이하 - 면적 5㎡ 초과 20㎡ 이하 - 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u>18,000원</u> <u>26,000원</u> <u>1,000원</u>
나. 돌출간판	- 연면적 3.5㎡ 이하 - 연면적 3.5㎡ 초과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u>18,000원</u> <u>26,000원</u> <u>2,000원</u>
다. 옥상간판	- 연면적 50㎡ 이하 - 연면적 50㎡ 초과 70㎡ 이하 - 연면적 7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u>27,000원</u> <u>49,000원</u> <u>1,600원</u>
라. 지주 이용 간판·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 20㎡ 이하 - 연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u>18,000원</u> <u>26,000원</u> <u>1,000원</u>
마. 애드벌룬 -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	- 다의 옥상간판에 준함 - 라의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바. 공연간판 - 벽면에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	-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사. 현수막 게시시설	- 면적 30㎡ 이상 40㎡ 이하 - 면적 4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u>14,000원</u> <u>800원</u>
아. 그 밖의 광고물 등	-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 등에 준함	

(변경)

〔별표 6〕

광고물등 안전점검 수수료(제27조제1항제2호 관련)

광고물등	적용기준	수수료
가. 벽면 이용 간판	- 면적 5㎡ 이하 - 면적 5㎡ 초과 20㎡ 이하 - 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u>18,000원</u> <u>26,000원</u> <u>1,000원</u>
나. 돌출간판	- 연면적 3.5㎡ 이하 - 연면적 3.5㎡ 초과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u>18,000원</u> <u>26,000원</u> <u>2,000원</u>
다. 옥상간판	- 연면적 50㎡ 이하 - 연면적 50㎡ 초과 70㎡ 이하 - 연면적 7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u>27,000원</u> <u>49,000원</u> <u>1,600원</u>
라. 지주 이용 간판·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 20㎡ 이하 - 연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u>18,000원</u> <u>26,000원</u> <u>1,000원</u>
마. 애드벌룬 -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	- 다의 옥상간판에 준함 - 라의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바. 공연간판 - 벽면에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	-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사. 현수막 게시시설	- 면적 30㎡ 이상 40㎡ 이하 - 면적 4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u>14,000원</u> <u>800원</u>
아. 그 밖의 광고물 등	-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 등에 준함	

(현행)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제26조제1항제3호 관련)

구 분	수수료	비 고
가. 옥외광고사업 신규 등록	15,000원	
나. 옥외광고사업 변경 등록	7,500원	

비고: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사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

(변경)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제27조제1항제3호 관련)

구 분	수수료	비 고
가. 옥외광고사업 신규 등록	15,000원	
나. 옥외광고사업 변경 등록	7,500원	

비고: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사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

[별표7]

(현행)

과태료 부과기준(제29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1.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법 제3조, 제3조의2, 제5조제2항제3호 위반)	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	52
가. 입간판		
1) 도로(보도 포함)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 미만		
- 0.5㎡ 미만		15만원
- 0.5㎡ 이상 0.8㎡ 미만		24만원
- 0.8㎡ 이상 1㎡ 미만		34만원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 1㎡ 이상 1.3㎡ 미만		44만원
- 1.3㎡ 이상 1.6㎡ 미만		52만원
- 1.6㎡ 이상 2㎡ 미만		64만원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 2㎡ 이상 2.3㎡ 미만		77만원
- 2.3㎡ 이상 2.6㎡ 미만		102만원
- 2.6㎡ 이상 3㎡ 미만		129만원
라) 연면적 3㎡		130만원
- 3㎡ 초과하는 면적 0.5㎡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2) 그 밖의 지역·장소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 미만		
- 0.5㎡ 미만		10만원
- 0.5㎡ 이상 0.8㎡ 미만		12만원
- 0.8㎡ 이상 1㎡ 미만		14만원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 1㎡ 이상 1.3㎡ 미만		27만원
- 1.3㎡ 이상 1.6㎡ 미만		35만원
- 1.6㎡ 이상 2㎡ 미만		49만원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 2㎡ 이상 2.3㎡ 미만	60만원
- 2.3㎡ 이상 2.6㎡ 미만	70만원
- 2.6㎡ 이상 3㎡ 미만	79만원
라) 연면적 3㎡	80만원
- 3㎡ 초과하는 면적 0.5㎡당	8만원을 더한 금액
나. 현수막	
가) 면적 3㎡ 미만	
- 1㎡ 미만	10만원
- 1㎡ 이상 2㎡ 미만	12만원
- 2㎡ 이상 3㎡ 미만	14만원
나) 면적 3㎡ 이상 5㎡ 미만	
- 3㎡ 이상 3.7㎡ 이하	22만원
- 3.8㎡ 이상 4.4㎡ 이하	25만원
- 4.5㎡ 이상 5㎡ 미만	34만원
다) 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 이하	45만원
- 6.1㎡ 이상 8㎡ 이하	60만원
- 8.1㎡ 이상 10㎡ 미만	79만원
라) 면적 10㎡ 이상	80만원
- 10㎡ 초과하는 면적 1㎡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다. 벽보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장당 20천원
- 11장 이상 20장 이하	장당 30천원
- 21장 이상	장당 45천원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장당 40천원
- 11장 이상 20장 이하	장당 45천원
- 21장 이상	장당 50천원
라. 전단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장당 10천원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20천원 장당 30천원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30천원 장당 40천원 장당 50천원
2. 법 제10조의4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가.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1의3	1만원에 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을 더한 금액
나.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		1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다.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인 경우		70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3.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가. 30일 이상 90일 미만 나. 90일 이상 180일 미만 다. 180일 이상 1년 미만 라. 1년 이상	법 제20조 제1항제2호	79만원 149만원 299만원 500만원
4.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5호	99만원 249만원 500만원
5.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가. 1회 위반한 경우 나. 2회 연속 위반한 경우 다. 3회 연속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 제2항	29만원 49만원 100만원

(변경)

과태료 부과기준(제28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1.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법 제3조, 제3조의2, 제5조제2항제3호 위반)	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	52
가. 입간판		
1) 도로(보도 포함)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 미만		
- 0.5㎡ 미만		15만원
- 0.5㎡ 이상 0.8㎡ 미만		24만원
- 0.8㎡ 이상 1㎡ 미만		34만원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 1㎡ 이상 1.3㎡ 미만		44만원
- 1.3㎡ 이상 1.6㎡ 미만		52만원
- 1.6㎡ 이상 2㎡ 미만		64만원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 2㎡ 이상 2.3㎡ 미만		77만원
- 2.3㎡ 이상 2.6㎡ 미만		102만원
- 2.6㎡ 이상 3㎡ 미만		129만원
라) 연면적 3㎡		130만원
- 3㎡ 초과하는 면적 0.5㎡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2) 그 밖의 지역·장소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 미만		
- 0.5㎡ 미만		10만원
- 0.5㎡ 이상 0.8㎡ 미만		12만원
- 0.8㎡ 이상 1㎡ 미만		14만원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 1㎡ 이상 1.3㎡ 미만		27만원
- 1.3㎡ 이상 1.6㎡ 미만		35만원
- 1.6㎡ 이상 2㎡ 미만		49만원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 2㎡ 이상 2.3㎡ 미만	60만원
- 2.3㎡ 이상 2.6㎡ 미만	70만원
- 2.6㎡ 이상 3㎡ 미만	79만원
라) 연면적 3㎡	80만원
- 3㎡ 초과하는 면적 0.5㎡당	8만원을 더한 금액
나. 현수막	
가) 면적 3㎡ 미만	
- 1㎡ 미만	10만원
- 1㎡ 이상 2㎡ 미만	12만원
- 2㎡ 이상 3㎡ 미만	14만원
나) 면적 3㎡ 이상 5㎡ 미만	
- 3㎡ 이상 3.7㎡ 이하	22만원
- 3.8㎡ 이상 4.4㎡ 이하	25만원
- 4.5㎡ 이상 5㎡ 미만	34만원
다) 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 이하	45만원
- 6.1㎡ 이상 8㎡ 이하	60만원
- 8.1㎡ 이상 10㎡ 미만	79만원
라) 면적 10㎡ 이상	80만원
- 10㎡ 초과하는 면적 1㎡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다. 벽보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장당 20천원
- 11장 이상 20장 이하	장당 30천원
- 21장 이상	장당 45천원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장당 40천원
- 11장 이상 20장 이하	장당 45천원
- 21장 이상	장당 50천원
라. 전단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장당 10천원
- 11장 이상 20장 이하	장당 20천원

- 21장 이상		장당 30천원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장당 30천원
- 11장 이상 20장 이하		장당 40천원
- 21장 이상		장당 50천원
2. 법 제10조제4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1의3	
가.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1만원에 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을 더한 금액
나.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		1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다.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인 경우		70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3.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2호	
가. 30일 이상 90일 미만		79만원
나. 90일 이상 180일 미만		149만원
다. 180일 이상 1년 미만		299만원
라. 1년 이상		500만원
4.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5호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99만원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249만원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500만원
5.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 제2항	
가. 1회 위반한 경우		29만원
나. 2회 연속 위반한 경우		49만원
다. 3회 연속 위반한 경우		100만원

[별지 제3호서식]

(현행)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제18조제3항 관련]

제 호				처리기간 30일
신 청 자	성 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 소			
영업장 소재지			전 화 번 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	수수료
		「울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변경)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제18조제2항 관련]

제 호				처리기간 30일
신 청 자	성 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 소			
영업장 소재지				전 화 번 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	수수료
		「울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참조

[별지 제4호서식]

(현행)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지정서(제18조제4항 관련)

제 호			
수탁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위탁기간	20 . . . ~ 20 .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직인

(변경)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지정서(제18조제3항 관련)

제 호				
수탁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위탁기간	20 . . . ~ 20 .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직인

[별지 제5호서식] - 제18조제6항 관련
(현행)

규격	가로 6cm x 세로 8cm	바탕색	연녹색	글자	검정색
< 앞 쪽 >		< 뒤 쪽 >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검사원증 사진 (3.5×4.5) 울산광역시 중구		소속 : 직위 : 성명 : 생년월일 : 자격기한(20 . . . ~ 20 .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 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 검사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직인			

(변경)

[별지 제5호서식] - 제18조제5항 관련

규격	가로 6cm x 세로 8cm	바탕색	연록색	글자	검정색
<앞 쪽>		<뒤 쪽>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검사원증 사 진 (3.5×4.5) 울산광역시 중구		소 속 : 직 위 : 성 명 : 생 년 월 일 : 자 격 기 한(20 . . . ~ 20 .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 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 검사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직인			

(뒤 쪽)

검사항목		검사내용 및 기준	검사결과
기본사항		설계도서 및 허가사항의 일치 여부(시설·구조·규격·내용 등의 무단변경 등)	
법 규		각종 법규 및 고시·명령 위반행위	
사용자재		부식방지의 자재 사용 또는 도장시공 여부	
		국가·공공기관에 의한 공인 규격품 및 자재의 사용 여부	
		철근, 앵커볼트, 골조 등 주요 구조부 사용자재의 규격, 밀도, 배치상태 등	
접합부위	기초부분	콘크리트 기초 표면의 적정경사, 노화, 균열, 변형 등 적합성 및 접합상태	
		접합부분 건물의 강도 확보 : 건물의 균열, 파손, 변형 등 (하중, 풍압력 등 고려)	
	구성자재	접합상태, 볼트·리벳·너트 등의 풀림, 마모 등	
		변형, 휨, 균열, 이탈, 파손, 부식 여부 등	
	용접상태	균열, 변형, 부식, 틈 발생 등	
전기설비		배선상태 : 적정용량, 과열, 오손(汚損), 파손, 노후, 노출 등	
		애자 연결부위 등 각종 자재의 상태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자재사용 여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을 받은 제품 사용 여부, 피뢰시설의 적정설치 및 유지 등	
통 행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등의 기능 장애 사항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장애	
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 후의 점검사항		강풍, 폭우·폭설 후, 폭발·충격 후	
기 타		그 밖에 안전·미관·생활·환경 저해여부 및 광고물 퇴색(退色) 여부 등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변경)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검사서(제19조제1항 및 제3항 관련)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검사구분	[]신규 []연장 []변경

광고물등의 허가 일자 및 번호	광고물등의 종류
표시위치 또는 장소	광고물등의 규격
신청일자	검사일자

점검내용	
점검의견	
점검결과	[] 합격 , [] 불합격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사자 소속
성명

직위(직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검사항목		검사내용 및 기준	검사결과
기본사항		설계도서 및 허가사항의 일치 여부(시설·구조·규격·내용 등의 무단변경 등)	
법 규		각종 법규 및 고시·명령 위반행위	
사용자재		부식방지의 자재 사용 또는 도장시공 여부	
		국가·공공기관에 의한 공인 규격품 및 자재의 사용 여부	
		철근, 앵커볼트, 골조 등 주요 구조부 사용자재의 규격, 밀도, 배치상태 등	
접합부위	기초부분	콘크리트 기초 표면의 적정경사, 노화, 균열, 변형 등 적합성 및 접합상태	
		접합부분 건물의 강도 확보 : 건물의 균열, 파손, 변형 등 (하중, 풍압력 등 고려)	
	구성자재	접합상태, 볼트·리벳·너트 등의 풀림, 마모 등	
		변형, 휨, 균열, 이탈, 파손, 부식 여부 등	
	용접상태	균열, 변형, 부식, 틈 발생 등	
전기설비		배선상태 : 적정용량, 과열, 오손(汚損), 파손, 노후, 노출 등	
		애자 연결부위 등 각종 자재의 상태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자재사용 여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을 받은 제품 사용 여부, 피뢰시설의 적정설치 및 유지 등	
통 행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등의 기능 장애 사항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장애	
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 후의 점검사항		강풍, 폭우·폭설 후, 폭발·충격 후	
기 타		그 밖에 안전·미관·생활·환경 저해여부 및 광고물 퇴색(退色) 여부 등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근 거 법 규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① 법 제14조제1항의 배분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제10조제1항 관련)

구 분	시·도 사무	시·군·자치구 사무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다.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1) 주거생활환경 개선계획 수립·조정 2) 농촌쓰레기 수거계획 수립·지도 3) 위생화장실 개량사업계획 수립·통보 4) 새마을 환경정비사업 계획 수립 5) 생활개선사업 지원·지도 6) 광고물관리 기본지침 수립·조정	1) 주거생활환경 개선실천계획 수립·시행 2) 농촌쓰레기 수거와 지도·단속 3) 위생화장실 개량사업 시행 4) 새마을 환경정비사업 추진 5) 생활개선사업 추진 6) 광고물 설치허가와 신고수리 7) 광고물 정비·단속 8) 광고물 제작업자 지도·단속 9) 농어촌정주권 개발사업 시행 10)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시행

□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③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현수막 및 그 지정게시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지정게시대는 구청장 또는 군수가 설치하여야 한다.
2. 지정게시대의 가로는 10미터 이내, 윗부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8미터 이내로 해야 하며, 색깔은 무채색·저명도·저채도의 색채를 기본으로 해야 한다.
3. 지정게시대는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4.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내용을 표시할 수 없다.
5. 1개의 지정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하나만 표시 해야 한다.
6.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2회 이상 계속하여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현수막의 게시신청이 없거나 구청장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7.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현수막의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점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구청장·군수는 선정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8. 그 밖에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 또는 군수가 정하는 사항에 따른다.

제12조의2(가로등 현수기의 표시방법) 영 제2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가로등 현수기의 규격 및 표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로 70센티미터 이하, 세로 2미터 이하일 것
2. 가로등 기둥에 10센티미터 이하로 밀착시켜 표시할 것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4호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조례 등의 시행에 따라 의무적·임시적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시행규칙 등 하위규정의 시행에 따라 발생이 예상되는 비용까지 포함하여 실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자료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이미 시행되어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
3. 비용추계 대상이 보안을 요하는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수 없는 경우
4. 조례 등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미첨부 사유

-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3. 작성자

- 소 속: 건축과
- 직 위: 지방시설주사
- 이 름: 장명섭
- 연락처: (052)290-4441